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변경협의 절차 등을 합리화하고, 초급 평가자의 자격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의 타당성 검토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3조제2호 및 안 제26조제2항)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면 환경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증가 판단시 최소 지역범위 적용(안 제20조, 안 제28조제1항제1호, 안 제29조제1항제3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 및 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제수럼, 변경협의, 재협의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규모의 증가 비율을 판단할 때 최소 지역범위 내에서 증가되는 규모로 한정하여 판단하도록 함

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합리화(안 제5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변경시 협의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을 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협의 내용에 반영된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한 환경보전방안 등 서류를 제출하면 승인기관장은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장에게 의견을 요청하도록 함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합리화(안 제63조의2제1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중 규모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지 10년 이내의 증가한 규모로 한정하고, 부지면적의 30%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중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함

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신규 추가 및 정비(안 별표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를 설치하려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함

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하천·하천기본계획 추가(안 별표 2의2)

신속한 재해예방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소하천·하천기본계획을 협의와 의견수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함

사.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적용시기 합리화(안 별표 3 제2호, 제3호 및 제15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 정비사업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대상 적용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같이 현행 1만 킬로와트 이상에서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하며,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매립시설과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적용기준을 구분하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를 “변경허가 전”으로 명확히 함

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화(안 별표 4 비고4 및 비고1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친수지구로 지정된 하천구역에서의 환경오염배출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농지 개발·보전 사업,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연접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 기준을 합리화함

자.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합리화(안 별표 5의2)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을 합리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규제심사 전

대통령령 제 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사유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제20조 중 “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을 “가목11), 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가목11)의 경우에는 도로 및 철도의 건설사업에 한한다)”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20일 이내에”를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을 “가목11), 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가목11)의 경우에는 도로 및 철도의 건설사업에 한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같은 호 마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을 “가목11), 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가목11)의 경우에는 도로 및 철도의 건설사업에 한한다)”로 한다.

제55조제2항제6호 중 “그 밖에”를 “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협의 내용에 반영된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2호 본문 중 “사업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을 “사업 규모가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30퍼센트 이상”으로, “사업 규모의”를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가되는 사업 규모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따른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를 “변경(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따른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협의 내용에 반영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항만의 건설·개발	1)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연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별표 2 제1호차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2) 중 “산업정비구역”을 “산업혁신구역”으로 하며, 같은 호 과목에 34) 및 3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시행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때
3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진흥지구를 지정하기 전

별표 2 비고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를 설치하려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별표 2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립·확정된 정책계획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 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정책계획으로 본다.

별표 2의2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별표 3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별표 3 제3호다목1) 단서 중 “이상인 것”을 “이상인 것,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경우에는 발전시설 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단서 중 “이상인 것”을 “이상인 것,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경우에는 발전시설 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10만킬로와트”를 “10만킬로와트, 발전사업용 전

기저장장치의 경우에는 발전시설 용량이 10만킬로와트”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가목1) 중 “폐기물매립시설”을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목 2)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정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의 “3)”과 “4)”를 각각 “4)”와 “5)”로 하며, 같은 호 나목3)가) 중 “전”을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으로 한다.

- 3)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frac{\text{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30\text{만 제곱미터}} + \frac{\text{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조성면적}}{5\text{만 제곱미터}} \text{ 또는 } \frac{\text{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용적}}{330\text{만 세제곱미터}} + \frac{\text{지정폐기물 매립용적}}{25\text{만 세제곱미터}}$$

별표 4 비고 제4호다목 중 “위한”을 “위한 사업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 중 “따른”을 “따른 시설 및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하천법」 제44조에 따라 지정한 친수지구에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등에서 규정하는 배출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사업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및 「골재채취법」 제22

조에 따른 골재채취는 제외한다)

별표 4 비고 제11호 중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을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여러 번의 추가 승인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을 초과하기 직전의 면적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5의2 제5호나목 중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을 “환경분야에서 근무한”으로 하고, 같은 란 1) 중 “석사학위를”을 “학사학위 이상”으로 하며, 같은 란 2) 중 “학사학위”를 “전문학사학위”로,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을 “환경분야에서 근무한”으로 하고, 같은 란 3)을 삭제하며, 같은 란 4)를 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파목34)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목 35)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신설>

2. 3. (생략)

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개발기본계획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1), 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이하 “최소 지역범위”라 한다)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사유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가목11), 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가목11)의 경우에는 도로 및 철도의 건설사업에 한한다)-----

	--
제26조(협약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① (생략)	제26조(협약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받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 30 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
제28조(재협약의 대상) ① (생략)	제28조(재협약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법 제18조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약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약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1), <u>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u>	1. ----- ----- ----- ----- ----- ----- ----- <u>가목11), 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가목11)의 경우에는 도로 및</u>

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u>철도의 건설사업에 한한다</u> ----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협약) ① (생략)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협약) ①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18조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별표 2 제2호가목1), <u>같은 호 마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u>].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3. ----- ----- ----- ----- ----- ----- <u>가목11), 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가목11)의 경우에는 도로 및 철도의 건설사업에 한한다</u> ----- ----- ----- ----- -----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생략)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②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 통보 시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협의의 내용의 변경 시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7. (생략)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는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 통보 시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이나 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협의의 내용에 반영된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 그 밖에 협의의 내용의 변경 시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7. (현행과 같음)

③ -----

-----, 이 경우 환경보전방
안을 검토하여야 하는 승인기관
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 ① 법 제46조의 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최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서의 변경협의) ① -----

1. (현행과 같음)

2. ----- 사업 규모가 사
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
0년 이내에 30퍼센트 이상 --

----- 사업의 승
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
내에 증가되는 사업 규모의 -

----- . 다만, 확정
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
되는 경우와 -----

소 지역범위(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를 말한다)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에 반영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따른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단서 신설>	3. ----- ----- ----- ----- ----- -----변경(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따른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협의 내용에 반영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5. (생략) ②·③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271